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36
----------	------

2022년 4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2년 3월 10일
- 다. 회부일 : 2022년 3월 16일
- 라. 상정일 :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4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 가. 제안이유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2. 1. 27. ~ 2. 8.)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일부개정 2020. 8. 4., 시행 2021. 2. 5.) 제5조의31)에서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협의회와 요구사항인 위원구성 및 역할을 추가하여 2021년 제301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의안 2493, 김용석 의원 외 16명 발의)를 개정한 바 있음.2)3)

- 이에 따라 현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위원회의 성격상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위원회의 존속기한(2027년 7월 12일)을 정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서울특별시조례 제6217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와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3) 제10조의 본문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을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고, 제11조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

6. 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자치구의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련 국장(4급)
8.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기존 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협의회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협의회로 하지 않고 추진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2021년 3월 2일 회신받아,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명칭의 변경 없이 위원구성 및 역할을 추가하여 협의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또한, 조례의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조문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함(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3면 참조).

○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21년 조례 개정으로 위원구성을 확대(15명 → 20명) 한 이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바(2021-2차 65%, 2022-1차 55%),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안장치도 필요 하다고 하겠음.

○ 2020년 ~ 2022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일시	회의개최명 (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정책반영내용	온라인 개최여부
'20.6.5.	정기회의 (2020-1차)	13명 (총15명)	86.7%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심의 - '20년 추진계획 보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 자문	-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내용 반영	오프라인

'20.11.23.	정기회의 (2020-2차)	11명 (총15명)	73.3%	-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주요 추진계획 보고 - 개인정보 가명처리 업무 추진절차 및 계획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추진계획 반영 - 소위원회, 가명처리 관련 조례개정 반영	오프라인
'21.2.16.	정기회의 (2021-1차)	12명 (총15명)	80%	- '21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보고 및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 개정(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 '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 (조례개정) 심의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기능 추가	오프라인
'21.10.22.	정기회의 (2021-2차)	13명 (총20명)	65%	- '2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추진실적 보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의결	- 개인정보 가명화 처리센터 운영 관련 검토사항 추가 -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결정	온라인
'22.2.28.	정기회의 (2022-1차)	11명 (총20명)	55%	- '21년 추진실적 및 서울시 가명정보 내부결합 사례보고 - '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 계획 심의	- '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 향후 PbD 중심 계획 수립	온라인

○ 2020년 ~2022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	결산	집행율	집행내역
2020년	6,250	3,693	59.0%	- 안건검토·참석수당 : 3,150천원 - 회의부대비용 : 543천원
2021년	6,250	4,039	64.6%	- 안건검토·참석수당 : 3,650천원 - 회의부대비용 : 389천원
2022년 2월까지	6,250	1,500	24.0%	- 안건검토·참석수당 : 1,500천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6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22. 1. 27.~2. 16.)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lt;신 설&gt;</u>	<u>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u>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안으로, 위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조례안이 개정되어도 비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현재 심의위원회 운영 중이며 5년간 위원회 소요 예산은 [붙임] 참고)

### 4. 작성자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권동구 02-2133-2972

**[붙임] 5년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 5년간 총 비용(합계) ≙ 40,300천원, 연평균 8,060천원 발생

- 총비용 = 실무협의회 운영 비용 + 소위원회 운영 비용  
= 21,300천원 + 19,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무협의회 운영 비용 (제12조제6항)	4,260	4,260	4,260	4,260	4,260	21,300
	소위원회 운영 비용 (제12조의1)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소계(b)	8,060	8,060	8,060	8,060	8,060	40,300
	총비용(b-a)	8,060	8,060	8,060	8,060	8,060	40,300

1) 실무협의회 운영 비용 =  $\sum_{i=1}^5$ (연간실무협의회운영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 비용 ≙ 4,26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비

≙ (200천원×9명×2회) + (30천원×11명×2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담당공무원 1명, 시의원 1명을 제외한 9명, 업무추진경비는 11명을 기준으로 추계

2) 소위원회 운영 비용 =  $\sum_{i=1}^5$ (연간소위원회운영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 비용 ≙ 3,80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비

≙ (200천원×4명×4회) + (30천원×5명×4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담당국장(공무원) 1명을 제외한 4명, 업무추진경비는 5명을 기준으로 추계